경기도 공고 제 2025 – 5212 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(영업정지)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5 조의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 년 2 월 24 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기간)	처분사유	처분근거
주식회사 강후 종합건설 (이민호)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9, 504호	건축공사업 (10-2668)	영업정지 4개월 ('25. 2. 26.~ '25. 6. 25.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(기술능력) 미달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3 조제 3 호